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·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9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6.

발 의 자:서미화・김예지・조인철

염태영 • 박지원 • 송재봉

이성윤 • 이기헌 • 박주민

이재강 • 복기왕 • 강준현

김남희 · 오세희 · 이수진

박해철 • 권향엽 • 위성곤

박홍배 · 임미애 · 박희승

박범계ㆍ허 영ㆍ이병진

김소희 · 정준호 · 최수진

윤준병 • 추미애 • 김선교

조계원 · 김문수 · 허성무

의원(3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의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을 20분으로 규정하면서,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 (이하 "장애의원"이라 한다)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은 본회의 회기 중 실시되는 대정부질

문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 위원회에서 장애의원이 발언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, 위원회가 문서를 관리할 때 장애의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서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형평성에 반할 수 있고, 회의장 내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과 장애인보조견 등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으로 인해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, 장애의 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,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 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,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 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0조제1항, 제70조제6항 및 제151조제1항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 단서 중 "정하여야 한다"를 "정하되,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을 주어야 한다"로 한다. 제7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생산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시각장에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을 위하여 점자 및 음성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서 보관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또는 물건과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60조(위원의 발언) ① 위원은 제60조(위원의 발언) ① --위원회에서 같은 의제(議題)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 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. 다만.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 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 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. -----정하되,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위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발언시간을 주어 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0조(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 제70조(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 가) ① ~ ⑤ (생 략) 간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생산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 되거나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 를 관리할 때에는 시각장애 등 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. 장애를 가진 위원을 위하여 점 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 용하여야 한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<신 설>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문

제15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(생략)

<신 설>

서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장이 정한다.

제151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①
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
애 등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
정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
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, 「장
애인복지법」 제40조에 따른
장애인 보조견 또는 물건과 함
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다.